

소문과 편견이라는 **장벽,**

여성폭력 '2차 피해'
바로 알기

사건 이후 시작되는 **또 다른 폭력,**
우리는 피해자의 곁에 서 있습니까?

이제는 무심한 시선과 말들을 돌아볼 때입니다.



성평등가족부



한국여성인권진흥원

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을 때,
피해자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

따뜻한 위로보다 주변의 **싸늘한 시선과
의심**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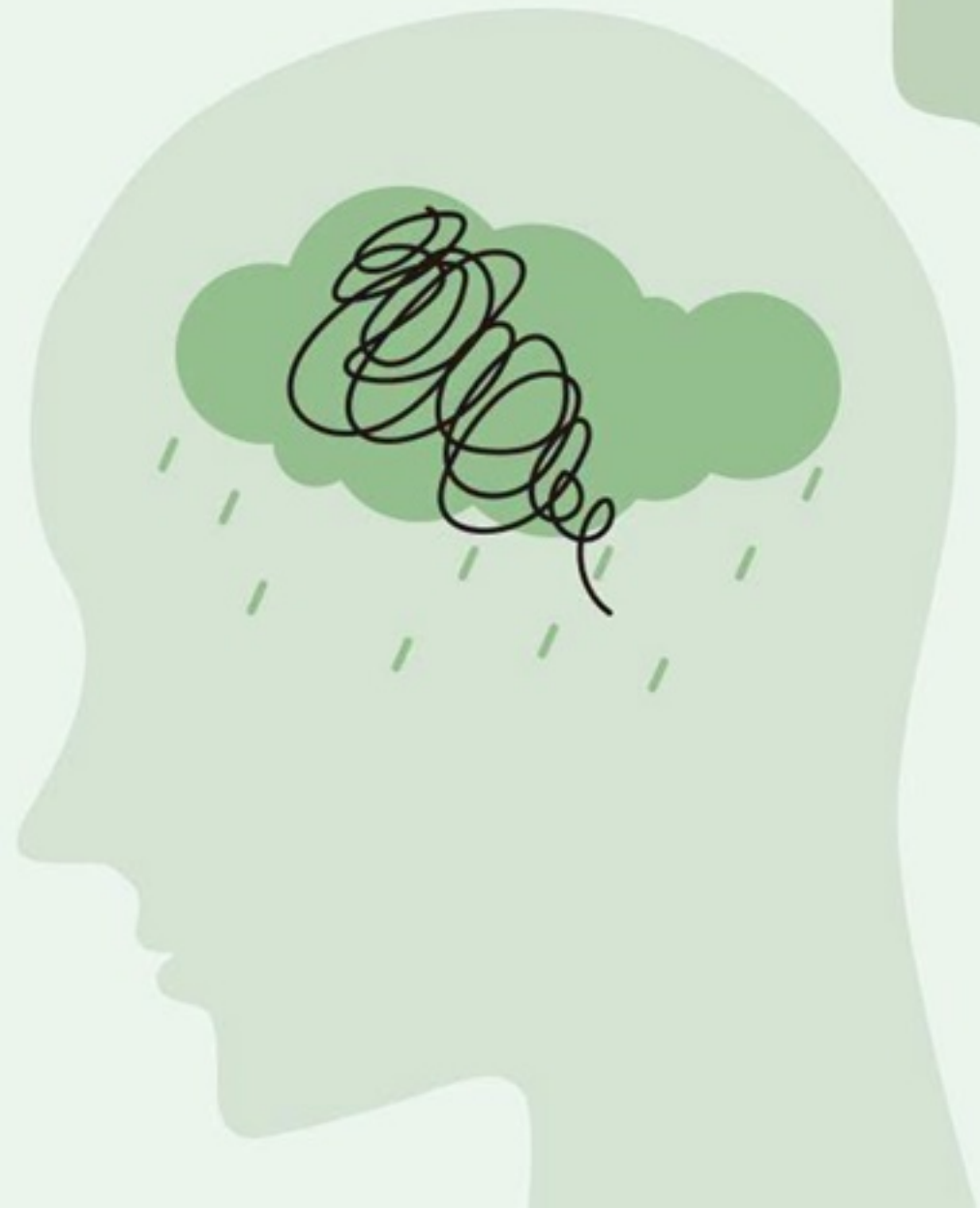
사건을 둘러싼 과정에서 발생하는
또 다른 고통,
바로 '2차 피해'입니다.

여성폭력 2차 피해란?

여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사법절차,
조직 내부, 또는 일상 속 관계에서

피해자가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불이익이나
추가 피해를 겪는 것을 말합니다.

출처: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2호



오해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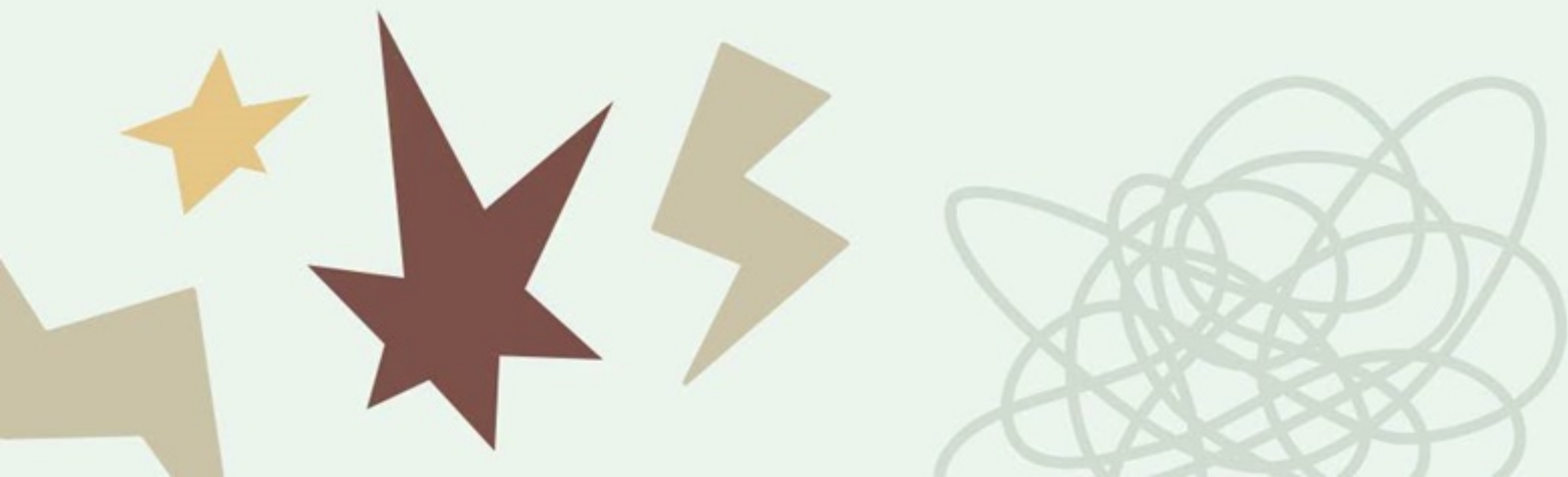
“단순히 걱정돼서 상황을
물어본 것뿐이에요.”

사실

과도한 호기심과 질문은
위로가 아닌 폭력입니다.

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을 캐묻거나
사생활을 들추는 질문은

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
되살리게 하는 폭력입니다.



오해 2

소문을 내거나 당사자를
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으면
괜찮은 거 아니가요?

사실

사건을 모른 척 방관하거나
동조하는 것 역시 **보이지 않는**
또 다른 폭력입니다.

소문에 동조하거나
피해자와의 대화를 피하고
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는

피해자를 조직 내에서
더 깊은 고립으로 내모는
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.



오해 3

“조직의 이미지가 있으니
좋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
 좋지 않을까요?”

사실

문제를 축소·은폐하도록
강요하는 것은 **명백한
불법 행위입니다.**

조직의 분위기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참으라고
권유하거나, 합의를 종용하거나,

신고를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
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에서

엄격히 금지되는 2차 가해입니다.

*성폭력방지법 제8조, 스토킹방지법 제6조,
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,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



피해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

STEP1

인식 점검하기

피해자에 대한 나만의 편견과 기준을 내려놓고 **사건을 바라봅니다.**

STEP2

비밀 유지하기

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이나 사건 관련 **정보를 유포하지 않습니다.**

STEP3

일상의 연대

지나친 관심이나 과도하게 의식하는 태도 대신 평온한 일상을
보낼 수 있도록 **평소와 다름없이 대합니다.**

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



소문에 동조하거나 이를 확산하지 않고,
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2차 피해를 멈추게 합니다.



소문 대신 위로를, 방관 대신 연대를 건네주세요.

여러분의 단단한 지지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습니다.